

# 방화의 동기

송 재 철  
〈화재조사 전문가〉

첫째,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한 방화를 뽑을 수 있고, 수상(受賞)목적, 승진목적, 취업목적, 위문금이나 시설 복지개선목적, 채권 채무 납품 납세 등의 유예 변제 구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가 있다.

둘째로는 범죄은폐나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로 살인후 증거를 인멸키 위한 방화, 강도나 절도 흔적을 은폐키 위한 방화, 사기나 횡령 또는 배임후 서류나 잔고를 소훼시켜 범행을 은폐 인멸하기 위한 방화, 기타 인사기록이나 성적표 등의 서류를 훼손시키기 위한 방화가 있다.

범죄의 수난목적으로 하는 방화는 살인을 하기 위해 음주 취침중인 사람의 방에 불을 놓는다든가, 계획적으로 불을 놓음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또 불을 놓아 혼잡한 틈을 타서 절도하기 위해 놓는 방화가 있고, 여러가지 형태의 무고를 위해 불을 놓는 경우, 공갈이나 협박을 위한 수단으로 소규모의 불을 놓는 경우도 있다.

셋째, 악희목적의 방화는 아이들의 불작난인 농화나 소위 무동기범죄로 분류하기도 하는 연쇄적인 가옥 점포 차량방화들을 볼 수 있다.

넷째로는 여러가지의 선동목적의 방화로 각종 사상적, 정치적 성격의 모략이나 시위의 목적, 정치적 분쟁이나 보복목적, 사회불안조성(민심소요, 태업 등), 노사문제제기목적 등의 방화가 이 부류에 속한다.

끝으로 앞의 목적이나 동기와는 조금 다른 여러가지 동기의 방화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염세방화, 자살을 위한 방화, 가정불화방화, 연모심이나 허영심 같은 시려천박에

서 행하는 방화, 병적이거나 소영웅심에서 저지르는 방화광적 방화로서 마약이나 알콜중독자, 변태성욕자, 공맹심이나 소아병적 열등자, 정신이상자, 점쟁이가 저지르는 방화로서 모두 정신성 점화행위임을 엿 볼 수 있는 것들인 것이다.

따라서 방화는 먼저 화재의 실제 발생상황으로서 화재의 기록, 사진, 스캐치 등과 증인확보, 증거불확보와 채취, 그리고 화재발생건물에 대한 내력과 화재의 정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피해상황의 파악과 화재가 실화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을 위한 실화적 요인의 배제상황, 화재가 방화로 판단되는 확증이나 정황증거(간접증거)들로서 화재발생사실의 조기신고와 소방작업지연 또는 방해행위, 자백의 사실이 있었을 경우 현장의 잔존물상항 등과 일치사실여부, 소방관 진화시 연소의 경로, 화염이나 화세에 따른 연소물상항 등의 진술과 특징인(이재관계) 행적의 목적진술 같은 것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 화재가 어떤 개인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는 진술만으로도 어느정도 증거가 결정되어 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잠겨진 건물의 열쇠를 독점하고 있었다는 사실같은 것이나 화상 또는 항상 휴대하는 개인 휴대품의 소속관계 같은 것들이다.

방화가 계획적인 경우 점화의 시간적인 조작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므로 알리바이는 화재의 발생시간적 특징에 따라 아주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이재자와 그 주변인물의 화재이력을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하고



특정인의 방화동기 설정은 합당한 객관적 사유가 중요하므로 말의 여러가지 상황과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험금 사취를 목적으로 한 방화라면 보험목적물에 비해 과다한 보험가입을 했을 뿐 아니라 수입이나 능력에 비해 과다한 보험가입, 중복, 초과보험가입을 예로 들 수 있고 보험가입후 재정사정이 악화되어 기업을 청산해야 할 형편에 있었다든지 재고나 유행이 지난 구식, 구형물건의 누증, 건물과 시설물의 법규위반이나 개 보수가 난감한 상태, 제품의 규격미달로 상품화가 곤란한 상태, 계약상품 등의 기일 내 납품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든지 하는 사실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연속적인 동일수법, 동일유형의 화재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동기에 의함으로서 화

재원인조사의 단서를 잡기가 어렵다.

문중간의 대립이나 종파간의 대립, 상호원한에 의하거나 상대적 이해가 얽힌 경우의 방화, 화재의 소란을 이용하는 도범의 수법같은 것들을 위시하여 노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연쇄 방화는 습관적, 연쇄적, 연속적이라는 것만이 특징이 될 뿐이다.

방화는 사회심리적으로나 경제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범죄자 자신의 성격, 심리 면에서도 복잡다양하여 그 범죄학적인 연구는 상당히 오래전 부터 계속되어 왔다.

19세기초 방화설에서 방화광설로 진전되면서 방화의 행위를 하나의 정신병으로 보고 방화광의 존재를 앞세우더니 여러 학자들이 반대설을 내 세움으로서 정신병으로서의 방화광설은 점차 수그러지면서

도 그 세는 유지,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즉 방화의 정신과학적 연구는 방화광으로 부터 시작되면서 논란되어 왔음이 사실이고 방화심리에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병 등의 소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방화광이라 하는 독립된 정신병이 현재 부정시는 되고 있으나 아주 사라졌다고 볼 수 없으며 아직도 다수의 사례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방화와 정신병과의 관계는 상당히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방화사건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른 다각적인 조사가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이상자의 소행은 아닐까 하는 분야의 것도 이와 같은 연유에 기인되는 것이다.

과거 외국의 어떤 조사를 보면 정신병자 가운데 방화범은 보통사람이 저지른 방화의 약 50배나 되는 높은 율을 차지했으며 또 다른 방화범 사례 조사에서는 정신병과 정신병질환자가 약 25%이고 성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정신병자에 의한 방화가 많은 것에 대해 학자간에는 여러가지의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중에 잠재의식설이 흥미있는 견해로서 주목이 되는 것이다.

즉 정신병자가 방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여러가지의 동기와 원인이 있겠으나 그 뿌리에 깔린 주된 이유는 인류의 불에 대한 잠재의식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㉞